

# 빌트인 연소기 설치기준 및 관련 해석 사례

## I 빌트인 연소기 설치 기준

### KGS FU551 2.4.4.5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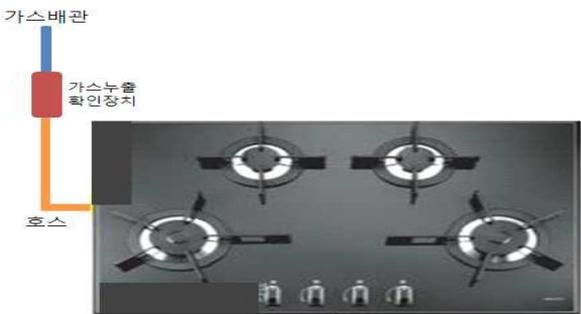
2.4.4.5.4 빌트인(Built-in) 연소기는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,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.

- (1)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)
- (2)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(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상세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)
- (3)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(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상세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)
- (4)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
\*KGS FU551 1.5.8 (‘11. 8. 26일 이후 설치되는 도시가스 빌트인 연소기에 적용)

점검구	내 용
 <p>● : 점검구 ■ : 연결부위</p>	<p>연소기와 호스의 연결부위의 점검이 가능토록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<b>점검구(호스 단면적 이상의 크기) 타공</b></p>

or

가스누출확인장치	내 용
 <p>가스배관 가스누출 확인장치 호스</p>	<p>다음 아래의 <b>가스누출확인장치</b>를 중간밸브(퓨즈콕) 설치위치 등 적절한 위치 및 장소에 설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</li> <li>(2)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</li> <li>(3)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</li> <li>(4) 가스누출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</li> </ol>

II

빌트인 연소기 설치 기준 해석 사례

현장사진(제품사례)	~ 경우에는	~ 합니다.
	<p>빌트인연소기 하부장 <b>여닫이문을 열어</b> 육안점검 및 가스누출 검지가 가능한 경우</p>	<p>가스누출 확인 점검구로 <b>인정</b></p>
	<p><b>배기그릴 제거 후</b> 육안점검 및 가스누출 검지가 가능한 경우</p>	<p>가스누출 확인 점검구로 <b>인정</b></p>
	<p><b>배기그릴이 뚫려있어</b> 육안점검 및 가스누출검지가 가능한 경우</p>	<p>가스누출 확인 점검구로 <b>인정</b></p>
	<p>점검구를 빌트인연소기 상판이 아닌 <b>개방된 하부장에 시공</b>하여 육안점검 및 가스누출 점검이 가능한 경우</p>	<p>가스누출 확인 점검구로 <b>인정</b></p>
	<p><b>하부장을 도구(드라이버 등)없이 빼내면</b> 육안점검 및 누출점검이 가능한 경우</p>	<p>가스누출 확인 점검구로 <b>인정</b></p>



하부서랍장을 **도구(드리아버 등)를 이용하여 빼내거나 분리해야만** 육안 점검 및 누출점검이 가능한 경우

가스누출 확인 점검구로 **불인정**



상판이 분리되는 구조이기는 하나 **상판을 인위적으로 들어야만** 가스 점검이 가능한 경우

가스누출 확인 점검구로 **불인정**



**가스누출확인장치** 란 ?

**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**
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1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함



**가스누출확인장치** 란 ?

**가스누출확인 퓨즈콕 (일반, 전자식, 디지털식)**

- 상세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을 말함



**가스누출확인장치** 란 ?

**가스누출확인 배관용 밸브**

- 상세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을 말함



**가스누출확인장치**란 ?

**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**

-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을 말함

빌트인연소기는 **2011년8월26일** 이전에 설치되었지만 **준공검사가 2011년8월26일 이후인 경우**

2011년 8월 26일 이전에 빌트인 연소기가 설치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(**사진제출, 설치확인서** 등등)이 있는 경우 **인정**

※ 빌트인연소기 설치기준 적용시기 : 2011. 8.26일

기존 빌트인연소기 사용 중에 2011년8월26일 이후 **싱크대 교체 없이 가스렌지만 교체할 경우**

**개정 기준에 따라** 점검구 또는 가스누출확인장치를 설치 해야함

소방법령에 따라 **주방 천정에 설치된 가스누출검지기(자동화식 소화기)**를 가스누출확인장치로 인정여부 ?

"가스누출확인장치"  
**불인정**

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**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검지부**의 경우 가스누출확인장치로 인정여부 ?

"가스누출확인장치"  
**불인정**